

제 375 호

1973. 6. 1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444 · 6090

시 보

차 례

이 일과본은 서울특별시의
필요에 따라 개정되었음.

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- ◎ 조 례
 - 제 771 호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3
- ◎ 고 시
 - 제 85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3
 - 제 86 호 건축선일부변경 4
 - 제 87 호 도시계획시설 (도로) 건설 및 지적승인 5
 - 제 88 호 도시계획사업 (국민학교) 시행허가 6
- ◎ 공 고
 - 제 113 호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에정지지정지 일부계획변경공람공고 6
- ◎ 용산구청 공인신조 (개각) 7
- ◎ 사 령 8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3. 6. 4.

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상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771 호

1973. 6. 4 공포

서울특별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

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(구 성) ①정 화위원회는 위원 장,

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8 인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교육위원회의 체육과장, 초등교육과장, 관재과장, 시경찰국 보안과장, 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및 시보건사회국 보건행정 과장이 된다.

제 4 조 (위원장등의직무)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5 호

자료성분등록고시

자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 제 1 호

1973. 6. 5

서울특별시 장

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

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.

등록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사			자료성분량				유효기간	비고
			성명	종류명	칭용도	최소량	최대량	조심유	조회분		
3-92	한일사료공업주식회사	동대문구상봉동350-6	차두홍	배합사료	젖메기송이개월까지	3 이상 19.0%	3 이상 2.5%	3 이하 8.0%	3 이하 9.0%	73.6.5	756.4

등록 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사			사료 성분량				유효비 기간	비 고	
			성명	종류	명칭	용도	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		조회분
3-93	한일사료공 업주식회사	평대문구상 봉동35-6	1차 두용	배합사료	젓소	송아	생후대략3 ~6개월까지	이상 6.0%	이상 2.5%	이하 10.0%	이하 9.0%	73.6.5
					젓소	큰양지	생후대략~ 18개월까지	"	"	"	"	"
3-94	"	"	"	"	젓소	큰양지	생후대략~ 18개월까지	12.0%	2.0%	12.0%	11.0%	"
3-95	"	"	"	"	고깃소	전기	"	15.0%	2.0%	13.0%	12.0%	"
3-99	"	"	"	"	고깃소	후기	"	11.0%	2.0%	10.0%	10.0%	"
3-96	"	"	"	"	큰병아리	배합사료(전기)	부화후대략 13주 초산까지	12.5%	2.5%	7.5%	10.0%	"
3-97	"	"	"	"	부로일러 기배합사료 (육성용배미)	부화후대략 4주이상	"	16.0%	2.5%	6.0%	10.0%	"
3-98	"	"	"	"	(육성용배미)	"	"	16.0%	2.5%	6.0%	10.0%	"
3-100	"	"	"	"	젓소용배합 사료(2회)	생후대략8 개월이상	"	13.5%	2.0%	13.0%	12.0%	"

*등록번호 "99" "96" "98"는 기재착오로 부득이 순번이 바뀌었음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6 호

건축선 일부변경

1. 당시 관내 건축선 일부변경을 건축
법 제 3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
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이고 있다.

1973. 6. 7

서울특별시장

건 축 선 · 변 경 조 서

구 분	토 폭	연 장	기	점	종	점	비 고
기 지 정	3	28	충정로 2 가 37-7		충정로 2 가 37-4		
변경지정	3	28	"		"		위치 일부 변경

별첨 도면참조 (도면생략) 도면은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배치함.

◎ 서울특별시 고시제 87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및지적승인

1.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호 (73.4.4)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3. 6. 7.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	점	종	점	비고
신설	소로	4		4	120	전농동 7-7		전농동 441-2	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88 호

도시계획사업(국민학교)시행허가

- 1. 서울특별시 제 56 호(73.4.24)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(국민학교 종합시설)시행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(73.4.4)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73. 6. 8.
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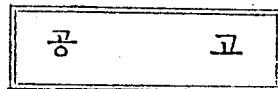
- 1. 사업시행지 : 영등포구신정동 86-2, 86-3, 86-4
- 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국민학교 종합시설사업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. 교육감
- 4. 면적 : 14, 163 중 11,074(3,356평)

5.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년월일 :

착수 : 1973. 6.15.

준공 : 1973.10.15.

- 6.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: (별첨)
- 7. 수용도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(별첨)
- 8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: (별첨)

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13 호

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
환지예정지 지정지일부
계획변경공람공고

- 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거점개발을 위하여 동사업지구 환지예정지일부에 대하여 일부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 46 조와 제 47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도서와 같이 환지계획을 변경수립하고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지소유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- 2. 서울특별시공고제 71 호 (73.4.13) 로 환지계획 변경 공람공고한 204-1 및 205 구획내의 토지는 사업의 조기시공상 그 변경계획을 철회한다.
- 3. 별첨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 과에 비치한다.
- 4.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

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될 것이나 수령치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.

1973. 6. 9.

서울특별시장

공 인 신 조 (개 각)

인 명 용산구청장 직인

1973년 6월 11일 변경
신규



(구)



(신)

위와같이 신조(개각)하였음.

용 산 구 청 장

공 인 신 조 (개 각)

인 명 용 산 구 청 장 직 인

1973년 6월 11일 변경
신규



(구)



(신)

위와같이 신조(개각)하였음.

용 산 구 청 장

사 령

◎ 1973.6.9.

소 방 본 부 조 건 부 지 방 소 방 원 유 병 옥

본 인 불 출 두 로 인 하 여 1973.

4.28 자 발 령 제 402 호 를

동 일 자 로 취 소 함.

소 방 본 부 조 건 부 지 방 소 방 원 우 세 곤

본 인 불 출 두 로 인 하 여 1973.

4.28 자 발 령 제 401 호 를

동 일 자 로 취 소 함.

소 방 본 부 조 건 부 지 방 소 방 원 이 경 우

본 인 불 출 두 로 인 하 여 1973.

4.28 자 발 령 제 401 호 를

동 일 자 로 취 소 함.

서 울 특 별 시 장